

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5. . .
발 의 자	이명희 의원

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5. . .

발 의 자: 이명희 의원(1인)

찬 성 자: 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정도
김춘남·박세채·신용하·이상호
이지연·장미경·정지원·허민근
의원(12인)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조치를 강화하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에 대한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 다. 피해아동 발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라.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 2) 「아동복지법」 제3조, 제4조, 제15조, 제22조, 제53조의2
- 3)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3조

나. 부서검토: 아이돌봄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를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조사·지원, 필요시 보호조치, 그 밖에”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을 “사업을 시행”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시행”을 “매년 수립·시행”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빈곤·학대 등의 사유로 원가정과 분리가 필요한 아동 발생시 개별 아동에 대한 상담·조사 및 보호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둘 수 있다.

⑤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며, 제6조를 제9조로 한다.

제8조를 제5조로 하고,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8조)의 제목“(교육 및 홍보)”를“(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피해아동 발견 및 보호)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및 응급 보호
2.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또는 피신고자에 대한 상담·조사·필요시 보호조치
3.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및 사례 연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심리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피해아동의 권익 보호와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쉼터의 주소 및 시설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쉼터 운영 관계자 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종전의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예산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4. (생략)</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p> <p>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u>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p>1. ~ 4. (생략)</p> <p>②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 ----- <u>아동학대 예방과 신고,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조사·지원, 필요시 보호조치, 그 밖에 -----</u> ----- <u>사업을 시행</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 ----- ----- <u>매년 수립·시행</u>-----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신 설>

제4조의2(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

용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빈곤·학대 등의 사유로 원가정과 분리가 필요한 아동 발생시 개별 아동에 대한 상담·조사 및 보호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둘 수 있다.

⑤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신 설>

제6조(피해아동 발견 및 보호) 시

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

<신 설>

사 및 응급 보호

2.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또는 피
신고자에 대한 상담·조사·

필요시 보호조치

3.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및
사례 연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운영 등)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 쉼터(이하 “쉼터”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
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심리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피해아동의 권익 보호와 신
체적·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쉼

<p><u>제6조(예산지원) ①</u>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p> <p><u>②</u>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p> <p><u>제7조 (생 략)</u></p> <p><u>제8조(교육 및 홍보) ①</u>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p> <p><u>② (생 략)</u></p> <p><u>제9조 ~ 제11조 (생 략)</u></p>	<p><u>터의 주소 및 시설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쉼터 운영 관계자 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u></p> <p><u>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u></p> <p><u>제9조(예산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u></p> <p><u>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u></p> <p><u>제5조(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①</u> ----- 실시하여야 한다.</p> <p><u>② (현행과 같음)</u></p> <p><u>제11조 ~ 제13조 (현행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u></p>
---	--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영역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52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제5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 11. (생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

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보호대상아동에게 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계획
2.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계획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및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

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대상아동에게 일시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1.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 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3.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4. 그 밖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⑧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및 일시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⑩ 보장원의 장 또는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신원확인 등의 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⑪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제9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제10항에 따른 신원확인 요청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⑥ ~ ⑦ (생략)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2.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치료
3. 피해아동에 대한 학습 및 정서 지원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기준·운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3조(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①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운영
3.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 예방·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②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2.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직무교육 및 역량강화에 관한 업무
3.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한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사례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③ 법 제22조제6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

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기관의
직원 역량강화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관련 국제교류
3.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관련 통계 생산 및 제공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아이돌봄과

조 례 명

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사항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조, 제4조, 제15조, 제22조, 제53조의2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주요 사항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 피해아동 발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것으로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 기대효과
 - 책무성 강화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소요예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문 제 점: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3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의2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에 대한 사항
- 안 제6조 : 피해아동 발견 및 보호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2025 법제업무편람 62p(비용추계서 첨부기준 제외대상)
 -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법률로 명문화 하는 경우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안 제4조의2 및 안 제7조 : ‘25년 기편성된 예산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사업
 - 사업 세부내용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비고
합계	1,381,278	
아동학대공공화사업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관련)	703,744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등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등)	677,534	

- 안 제3조 및 안 제6조의 사항은 의안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 아이돌봄과 아동보호팀 서인석(☎054-480-6593)